

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

(앞쪽)

수 증 자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	③ 거 주 구 분	[] 거주자 [] 비거주자
	④ 주 소				⑤ 전 자 우 편 주 소	
	⑥ 전화번호	(자택)	(휴대전화)		⑦ 증여자와의 관계	
증 여 자	⑧ 성 명		⑨ 주민등록번호		⑩ 증 여 일 자	
	⑪ 주 소				⑫ 전 화 번 호	(자택) (휴대전화)

1. 증여재산

⑬ 재 산 구 분 코 드	⑭ 재 산 종 류	⑮ 지 목 또는 건물·재산 종류	⑯ 소 재 지 · 법 인 명 등		⑰ 수 량 (면적)	⑱ 단 가	⑲ 금 액
			국 외 재 산 여	국 외 재 산 부 국 가 명			
			[] 여 [] 부				
			[] 여 [] 부				
			[] 여 [] 부				
계							
⑳ 사후관리 위반코드							

2.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

㉑ 증여세액	
--------	--

3. 이자상당액

㉒ 일수	
㉓ 이자율	
㉔ 이자상당액 (㉑ × ㉒ × ㉓)	

4. 납부할 세액

㉕ 납부할 세액 (㉑ + ㉔)	
------------------	--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7제16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(관리번호: ☎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1. "② 주민등록번호" 및 "⑨ 주민등록번호"란: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- 2. "③ 거주구분"란: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☒ 표시합니다.
* "거주자" 및 "비거주자"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3. "⑦ 증여자와의 관계"란 :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. (예시 : 부모(증여자)가 자녀(수증자)에게 증여하는 경우 : 자)
- 4. "⑬ 재산구분코드"란 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재산구분	증여재산	증여재산 (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)	비과세재산	과세가액불산입 (공익법인 출연재산)	과세가액불산입 (공익신탁 재산)	과세가액불산입 (장애인 신탁재산)	증여재산가산
코드	01	02	03	04	05	06	07

- 5. "⑭ 재산종류"란 : 토지, 건물,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.
- 6. "⑮ 지목 또는 건물 · 재산종류"란 :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(전, 답 등)을 기재하고, 주택,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(아파트, 상업용건물, 오피스텔 등) 등을 기재합니다.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(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, 상장주식 등)을 기재합니다.
- 7. "⑯ 소재지 · 법인명 등"란 :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.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☒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 · 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.
가.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: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(예시 :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)을 기재합니다.
나.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: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.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(예시 : 보험금인 경우 □□생명 △△보험 / 유가증권인 경우 ㈜○○건설)을 기재합니다.
- 8. "⑳ 사후관리 위반코드"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사후관리 위반유형	관련 조문	코드
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1항제1호	01
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제1호	02
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제1호	03
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제2호	04
가업을 승계한 후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제3호	05

- 9. "㉑ 증여세액"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.
- 10. "㉒ 일수"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.
- 11. "㉓ 이자율"란에는 납부유예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)을 적습니다.